일하는 모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산업안전보건 글로벌 리더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 모집 공고

▌ 생명 존중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고, 근로자와 기업에 최상의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역량과 덕망을 갖춘 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모십니다.

2026년 11월 13일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장

1. 모집 개요

□ (직위·인원) 안전보건사업이사 1명

□ (대상 임기) 임명일로부터 **2년**(임기 경과 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)

□ (근 무 지) 공단 본부(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)

□ (보 수) 공단「보수규정」에 따라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지급

□ (주요 업무)

○ 산업안전, 산업보건, 건설안전, 중대사고 및 화학공장 공정안전, 중대재해조사 및 사고 모니터링, 안전인증 및 검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

※ 공단「직제규정」및「직제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른 분장 업무 등

※ 임용기간 중 **직제개편, 내·외부 환경변화** 등에 따라 **상임이사 수행업무조정** 및 **임용직위가 변경될 수 있음**

2. 지원 자격

□ (**임용자격 요건**) 아래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
요 건	충 족 기 준	
포괄적 요건	▪ **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** -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-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사람 -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-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사람	
결격 사유	▪ **다음 임원 결격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** -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-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 제9조,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정관」 제18조	
구체적 요건	▪ **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**	
	학력	- (**박사학위 소지자**)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- (**석사학위 이하 소지자**)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
	자격	- **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**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
	경력	- (**공무원 경력**) ·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·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- (**민간 경력**) ·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·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	실적	- 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,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사람

※ 관련 분야 : 노동 및 산업관련 행정, 경영, 조직·인사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분야

※ 민간경력 인정범위 : 산하단체, 대학(전문대학 포함), 연구소, 민간기업(비상장 포함), 시민단체, 프리랜서 등 개인 활동 경력을 말함

***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**

제34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제22조제1항, 제31조제7항, 제35조제2항·제3항, 제36조제2항, 제48조제4항·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
2.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***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 제9조**

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***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관」 제18조**

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3. 접수 및 심사방법

□ (**접수방법**)

○ 공고 및 접수기간 : **2026. 11. 13.(금) ~ 11. 23.(월) 12:00** <예정>

○ 제출서류

- 지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**【별첨 2】**
- 구체적 자격 요건 및 지원서 기재 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* 각 1부

* 최종 학력증명서, 재직(경력)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관련자격증 사본 등

※ 제출 후 서류 수정·보완 등 불가

○ 제출방법 : **방문 또는 등기우편**(**※ 온라인, 팩스 접수 불가**)

※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, 접수마감일시(11.23.12:00 까지) **도착분에 한해 유효**

○ 제 출 처 : (44429)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7층 경영지원실 인사부

□ (심사기준) 공단「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」근거 임용자격 요건 및 직무수행요건(직무수행역량) 기준 심사

직무수행역량	
기본 역량	**고유 역량**
① 조직관리 능력 ⅰ)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능력 ⅱ) 업무개선 능력 ⅲ) 인적·물적 자원 활용능력 **② 비전제시능력(전략적 사고 능력)** ⅰ)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ⅱ) 전략적 사고 및 전략 수립능력 ⅲ) 유연하고 전략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**③ 공직윤리** ⅰ) 청렴도 ⅱ) 준법성 ⅲ) 도덕성 **④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** ⅰ) 전략 및 방침 전달 능력 ⅱ)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사 ⅲ) 효율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**⑤ 정보화 능력** ⅰ) 새로운 정보의 수집·분석·가공 능력 ⅱ) 정보의 공유 및 활용 능력	**① 전문가적 능력** ⅰ)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ⅱ) 관련분야 업무수행 경험 ⅲ)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설정 능력 **② 직무 창의력** ⅰ) 업무상 낭비요인 제거 능력 ⅱ) 신기술, 기법 도입 능력 ⅲ) 문제의 핵심을 추출하여 구체화하는 능력 **③ 문제해결능력** ⅰ)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ⅱ) 문제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능력 ⅲ)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

□ (심사 방법)

ㅇ 1차 추천위원회 : 서류심사

ㅇ 2차 추천위원회 : 면접심사

※ **서류심사 합격자**에 한해 **면접일정 개별 통보 예정**

4. 기타 안내사항

□ 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원 추천 또는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□ 「공직자 윤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.

□ 불합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본인의 제출 서류를 반환 청구하는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되며,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됩니다.

□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지원실 인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☏ 052-703-0562, 0569)